

2017년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공고(2차)

기업 공통의 지재권 분쟁 대응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4. 28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목적

- 해외 진출(준비) 우리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

2. 신청 기간 및 대상

가. 신청 기간 : '17. 4. 28(금) ~ 5. 19(금), 21일간

나. 신청 대상 협의체 및 수행기관

1) 협의체 : 해외 진출(준비) 중소·중견·대기업 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(단, 중소·중견기업은 최소 2개社 이상 포함)

- * 대 기 업 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
- * 중견기업 :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
- *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

2) 수행기관 :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수행기관을 협의체에서 지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

- ① 공동대응 컨설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
- ② 공동대응 컨설팅 수행을 위해 인력과 전용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
- ③ 공동대응 컨설팅 수행을 위한 인력은 이공계 기술분야, 지재권 분야를 전공한 인력에 한하며 비정규직, 파견직을 제외한 정식 고용계약 인력이 8명 이상 일 것
- ④ 문헌 및 정보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·직원,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

- * 수행기관은 1년에 최대 5건을 초과하여 공동대응 컨설팅을 수행할 수 없음

다. 지원 대상사업 및 기업부담금

- (대상사업) 공동대응 전략 도출현안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
- (기업부담금)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%를 현물(인력투입비용)로 안분하되, 참여기업별 분담내역을 주관기관에 제출

< 지원분야별 세부지원내용 >

구 분	지원 과제 (컨설팅 기간/ 지원금(최대))	지원내용
①공동 대응전략 도출현안	㉠라이선스 공동협상 대응전략 (3개월 / 2천만원)	·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라이선스 체결이 필요한 경우 대응 방안 및 로열티 등 협상전략
	㉡특허피물(NPE) 문제특허 대응전략 (3개월 / 2천만원)	· 분쟁위험이 있는 특허피물(NPE), 경쟁사의 특허 조사 분석 및 사전대응 전략 구축 ※ 분쟁대응의 상대방(주체) 혹은 지재권(객체)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컨설팅분석을 통해 가상의 경쟁사, 문제권리(특허 등)를 발굴 및 분석 목적의 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	㉢경쟁사 문제특허 대응전략 (3개월 / 2천만원)	
②공동 피소대응 추진현안	㉠특허보증 공동대응 (3개월 / 2천5백만원)	· 바이어의 해외 특허 분쟁 위험성 문제 제기시 분석 및 IP전략 지원
	㉡경고장 공동대응 (3개월 / 2천5백만원)	·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(침해 중지·로열티 요구) 대응 방안 및 협상전략
	㉢피소 공동대응 (3개월 / 2천5백만원)	·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받은 경우 소송대응 및 협상전략
③공동 권리행사 추진현안	㉠공통 문제특허 법적대응 (3개월 / 4천만원)	· 특허피물(NPE), 경쟁사 등 해외기업의 분쟁 위험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법적 대응(공동 무효심판)
	㉡상표브로커 공동피해 법적대응 (3개월 / 4천만원)	· 동일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출원·선등록된 해외 상표·디자인에 대한 법적대응 (공동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)
	㉢온라인 위조상품 공동 법적대응 (3개월/ 4천만원)	· 해외 상표, 디자인을 침해한 동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
	㉣오프라인 위조상품 공동 법적대응 (3개월 / 4천만원)	· 해외 상표, 디자인을 침해한 동일 오프라인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(행정단속)

- * ① 상기 현안이외의 과제의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
- ② 상기 현안에 해당하는 과제일지라도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음
- ㉠ 분쟁 대상 해외기업의 소재지가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
 - ㉡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·지점·사무소(이하 ‘한국기업 지사’라 함) 인 경우

- ㉔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- ㉕ 공동대응 컨설팅 지원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㉖ 협의체 또는 소속 기업이 타인의 상표,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. 다만, 타인과 신청협의체 또는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
- ㉗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·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
3.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

가. 신청 방법

- **(협의체)** 컨설팅 수행 요건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 후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현물출자확인서(별지 제1-1호 서식)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(ip_care@koipa.re.kr) 또는 우편으로 접수
 - *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지원분야와 관계없이 기업 당 연간 1회만 지원
- **(컨설팅 수행기관)** 컨설팅 추진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, 수행인력 등록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, 서약서(별지 제3-1호 서식)를 제출

나. 심사평가 및 결과 통지

- **(서류심사)** 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·하자유무와 분쟁위험성 및 공동대응 필요성 등 협의체 지원대상 여부 심사
 - * 서류심사 중 결격사유 발생시 서류심사 중단 및 사업 신청서 반려
- **(심사평가)** 협의체, 수행기관 및 추진과업·비용 적정성 등에 대해 수행기관 발표(PPT) 평가(선정심사 기준(첨부3) 참고)
 - * 협의체, 수행기관 심사 모두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
 - * 80점 이상 협의체 중 고득점 순 선정, 동점자 발생시 ‘분쟁위험성’ 항목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대상자 선정
- **(결과통지)** 협의체 선정 결과 통지 : 6월초

< 지원 절차 >

신청서 제출 (4.28 ~ 5.19)(3주) ↓	이메일(ip_care@koipa.re.kr)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접수
추진계획서 등 제출 (5.19 ~ 5.26)(1주) ↓	수행기관의 추진계획서 제출 및 협의체 신청서 서류 보완
서류심사 (5.29 ~ 6.5) ↓	서류심사(신청서 서류 하자유무 및 협의체 지원대상 여부 심사)
심사평가 및 지원결정 통지 (6월 초) ↓	심사평가 및 지원결정 통지(발표일정 별도 안내)
협의체 컨설팅 수행 계약 (6월 중) ↓	협의체 참여기업-수행기관-보호원 3자간 계약 체결
공동대응 협의체 컨설팅 진행 (3개월) ↓	▶ 서면보고, 중간보고회, 최종보고회 등 ▶ 내·외부 전문위원을 통한 과제수행 점검 및 수행전략 도출
정부지원금 지급	▶ 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▶ 과업평가 후 과제수행기관에 정부지원금 지급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본 사업공고는 공모과제에 한정하며, 지정과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기업 협의체 구성 후 연중 수시로 수행기관 모집(공개경쟁) 예정

※ 사업 문의

○ 문의처 :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

- 전 화 : (02) 2183-5895, 8

- E-mail : ip_care@koipa.re.kr

- 주 소 : (06133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
-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: www.koipa.re.kr